

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(제7조제1항 관련)

1.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
 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,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
 - 나. 「연안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
 - 다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등
2.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
 - 가.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
 - 나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구역
 - 다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
 - 라.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
 - 마.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, 습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
 - 바.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
 - 사. 「지하수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
 - 아.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
 - 자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
 - 차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등
3.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
 - 가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
 - 나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·비행장개발예정지역
 - 다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,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
 - 라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
 - 마. 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시행지

- 바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
- 사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
- 아.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단지
- 자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
- 차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
- 카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
- 타. 「석탄산업법」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
- 파. 「신항만건설 촉진법」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
- 하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
- 거.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
- 너.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
- 더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
- 러.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
- 머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
- 버.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
- 서. 「항만법」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
- 어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등